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동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8 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신동욱・김은혜・고동진

권성동 • 주호영 • 이종배

박상웅 · 강대식 · 백종헌

구자근・안상훈・김 건

박정하 • 유용원 • 이만희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되는 안건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·자구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안건들의 경우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형평성, 체계 정합성 등이 복잡하여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.

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다수결의 원칙을 빙자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반복되면서 이 같은 쟁점 법안들이 충분 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통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책으로는 해당 법안의 심의·표결권을 침해 받은 국회의원이 소관 위원장 및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으나, 국회는 헌법재판 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등이 내려지기도 전에 법안을 본회의에 처 리하고 있는 실정임.

이는 「헌법재판소법」 제65조 및 소송 체계가 규율하는 가처분 제 도의 근본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자,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 임.

이에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및 심사 과정,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 심사 과정 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시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의 표결을 금지하도록 함(안 제85조의2제8항 등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7항까지의"를 "제8항까지의"로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「헌법 재판소법」 제65조에 따른 가처분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(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때를 포함한다)에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관한 표결을 할 수 없다.

제8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85조의2제8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) 제85조의2제8

항 및 제8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5조의2제1항 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한 권한쟁 의심판이 청구되어 가처분 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5조의2(안건의 신속 처리) ①	제85조의2(안건의 신속 처리) ①
~ ⑦ (생 략)	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
	련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
	「헌법재판소법」 제65조에 따
	른 가처분 결정 절차가 진행
	중인 때(가처분 신청서가 접수
	된 때를 포함한다)에는 본회의
	에서 해당 안건에 관한 표결을
	<u>할 수 없다.</u>
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	<u> </u>
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	
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	
터 <u>제7항까지의</u> 규정을 적용하	- <u>제8항까지의</u>
지 아니한다.	
제86조(체계·자구의 심사) ① ~	제86조(체계・자구의 심사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
	련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
	경우에는 제85조의2제8항을 준
	<u>용한다.</u>
⑤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